

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- 569호

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령」을 제·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제·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8월 14일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령」 개정령안 입법예고

1. 제·개정 이유

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12조의13 (공영주차장의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)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설비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, 이에 대한 세부 규모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설치의무 대상 주차장 규모 설정 (제16조의2)

- 주차구획의 면적이 1,000㎡ 이상인 주차장을 의무 대상으로 규정하되, 설비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주차장은 의무 대상 면적에서 제외

나. 설치의무 대상기관 기준 (제16조의3)

- 제도 운영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사 제도(공공기관 설치 의무화

제도) 동일한 기준을 반영

다. 의무이행방식 명확하게 정비 (제17조의3)

- 의무기관은 주차장에 설비를 직접 설치하거나(자가소비형 또는 발전사업형) 주차장을 임대하여 사업자가 설비를 설치하는 방식(부지임대형)으로 의무이행 가능
- 공공기관 설치의무 이행 목적 또는 자발적으로 이미 주차장에 신재생 설비가 설치된 경우 해당 용량에 대해 이행한 것으로 간주

라. 설치 전 검토절차 마련 (제17조의2, 부칙 제2조)

- 향후 의무 대상기관의 주차장 신설 시, 주차장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이전까지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 및 검토 결과에 따라 설비 구축 필요
- 다만, 부칙을 통해 기존 운영 중인 주차장은 개정령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 및 검토 결과에 따라 설비 구축하도록 함.

마. 설치 후 확인절차 마련 (제18조의2, 부칙 제3조)

-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를 제출
- 다만, 부칙을 통해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가 면제되는 시설의 물량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설치확인 신청서를 제출토록 함.

바. 권한 위임 및 업무 위탁 법적 근거 마련 (제30조 제3항)

-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에 계획서 검토 및 확인서 발급 업무 위탁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3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(참조 : 재생에너지정책과장,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)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,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
- 전자우편 : kigark@korea.kr
- 팩스 : 044-203-4769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(전화 044-203-5371, 팩스 044-203-4769, 전자우편 kigark@korea.kr)로 문의하여 주시고,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tie.go.kr> → 예산·법령 → 입법예고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대통령령 제 호

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

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령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,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) 법 제12조의13제1항 전단의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”이란 「주차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중 주차구획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주차장(이하 “의무 대상 주차장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 다만 주차장에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은 제외한다.

제16조의3(공영주차장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) ① 법 제12조의13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”이란 연간 50억원 이상을 말한다.

② 법 제12조의13제1항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.

1. 납입자본금의 100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
2.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

제17조의2,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공영주차장의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) ① 법

제12조의13제1항에 따라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공영주차장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영주차장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공영주차장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공영주차장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검토에 필요한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영주차장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,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공영주차장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⑤ 공영주차장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제17조의3제3항에 해당하는 신·재생에너지 설비 규모가 제3항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제17조의2에 따른 설치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

제17조의3(공영주차장의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이행 등) ① 제17조의2에 따라 설치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은 공영주차장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.

② 공영주차장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공영주차장에 직접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신·재생에너지

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영주차장 부지를 임대하여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 제12조의13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.
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·재생에너지 설비용량에 대하여 법 제12조의13에 따른 설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1. 의무 대상 주차장에 법 제12조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신·재생에너지 설비용량
2. 의무 대상 주차장에 자발적으로 설치된 신·재생에너지 설비용량

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공영주차장의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) ① 공영주차장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,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공영주차장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반영하였는지 확인한 후 공영주차장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영주차장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표할 수 있다.

제30조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0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~② < 생략 >
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센터에 위탁한다.

1~4. < 생략 >

5. 법 제12조의13 및 이 영 제17조의2에 따른 공영주차장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의 접수, 검토 결과 통보 및 의견 청취

6. 법 제12조의13 및 이 영 제18조의2에 따른 공영주차장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 발급

④ < 생략 >

부칙 제1조, 제2조,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부칙 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제2조 (공영주차장의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에 관한 특례) 제17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, 법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7조의2에 따른 공영주차장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조 (공영주차장의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에 관한 특례) 제18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, 법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 제17조의3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8조의2에 따른 공영주차장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 신설 >	제16조의2(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) 법 제12조의13제1항 전단의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”이란 「주차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중 주차구획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주차장(이하 “의무 대상 주차장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 다만 주차장에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은 제외한다.
< 신설 >	제16조의3(공영주차장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) ① 법 제12조의13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”이란 연간 50억원 이상을 말한다.
< 신설 >	② 법 제12조의13제1항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. 1. 납입자본금의 100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.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

< 신 설 >

< 신 설 >

< 신 설 >

< 신 설 >

제17조의2(공영주차장의 신·재생 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) ① 법 제12조의13제1항에 따라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공영주차장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영주차장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공영주차장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공영주차장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검토에 필요한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영주차장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,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공영주차장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< 신 설 >

< 신 설 >

< 신 설 >

< 신 설 >

⑤ 공영주차장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제17조의3제3항에 해당하는 신·재생에너지 설비 규모가 제3항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제17조의2에 따른 설치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

제17조의3(공영주차장의 신·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이행 등)

① 제17조의2에 따라 설치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은 공영주차장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.

② 공영주차장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공영주차장에 직접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영주차장 부지를 임대하여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 제12조의13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.
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
	<u>신·재생에너지 설비용량에 대하여 법 제12조의13에 따른 설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</u> 1. 의무 대상 주차장에 법 제12조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신·재생에너지 설비용량 2. 의무 대상 주차장에 자발적으로 설치된 신·재생에너지 설비용량
< 신 설 >	제18조의2(공영주차장의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) ① 공영주차장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,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공영주차장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확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< 신 설 >	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였는지 확인한 후 공영주차장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< 신 설 >	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영주

	<u>차장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표할 수 있다.</u>
제30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~② (생략)	제30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~② (현행과 같음)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센터에 위탁한다. 1~4. (생략) 5. < 신 설 >	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센터에 위탁한다. 1~4. (현행과 같음) 5. 법 제12조의13 및 이 영 제17조의2에 따른 공영주차장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의 접수, 검토 결과 통보 및 의견 청취 6. 법 제12조의13 및 이 영 제18조의2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 발급
6. < 신 설 >	
④ (생략)	④ (생략)
< 신 설 >	부칙 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신 설 >

제2조 (공영주차장의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에 관한 특례) 제17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, 법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7조의2에 따른 공영주차장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< 신 설 >

제3조 (공영주차장의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에 관한 특례) 제18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, 법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 제17조의3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8조의2에 따른 공영주차장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